

# 2020학년도 교비유학생 선발계획



2020. 04. 27

국제협력본부 국제협력부





## 2020학년도 교비유학생 선발계획

#### 1. 목적

- 우리대학 학부과정 졸업(예정)자들 중 해외 대학 석·박사학위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 경감
- 글로벌 인재 및 우수 연구자로의 성장에 일조
- 학위 취득 후 우리대학의 연구 및 교육 발전에 기여

#### 2. 선발개요

□ 선발인원 : 5명

□ 전공분야 : 전 분야

□ **수학과정** : 석사, 박사, 석·박사 연계과정

□ 파견지역 : 세계 전 지역

□ 지원자격

- 우리대학 학부 졸업생 중 석·박사과정 입학허가서 취득자 또는 학부 졸업예정 자 중 석사과정 입학허가서 취득자
- 재학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- 석·박사학위 지원과정별로 학부 졸업 후 지정기간 이내 경과자여야 함 (단, 남자는 학부 졸업 후의 군 복무기간은 제외)
  - 석사과정 지원자 : 학부 졸업일로부터 7년 이내(지원기한일 기준)
  - 박사과정 지원자 : 학부 졸업일로부터 10년 이내(지원기한일 기준)
- 학부 전체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3.30 이상인 자(소수자리 반올림 없음)
- 2020년도에 입학허가를 받았거나, 2020년도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
- 2019년도 제2학기(우리대학 기준) 또는 2019년도 하반기 이후에 입학을 하여 현재 재학 중인 자로 수업연한 잔여학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자 생 어학연수생은 지원 불가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

#### 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전문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<개정 2010.3.22., 2013.8.6., 2015.12.24.>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


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| [전문개정 2008.3.28.]

□ 선발기준 : 다음 각 항목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

항 목	배점	비고
학부과정 전체학년 성적	100	·평균 백분율 점수 적용 ·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성적만 반영
면접시험	100	·평균 점수 적용(총점/심사위원 수) ·각 심사위원은 100점 만점으로 채점 ·면접방법 : 화상면접
계(총점)	200	총점 순 선발

#### □ 심사위원단 구성 : 3명

○ 위 원 장 : 국제협력본부장

○ 심사위원 : 국제학술교류심의위원 2명

※ 면접시험은 국어로 진행하나, 지원 국가 언어 진행도 가능함

※ 심사위원단 구성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

#### □ 선발 원칙

○ 동점자 처리 : 면접점수 우수자

○ 면접시험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, 후보자 순위에 포함하지 않음

※ 화상면접은 우리나라 시간 기준, 사전통보된 면접시간 중에 화상연결이 가능 하여야 하고 화상연결 불가 시 결시처리 됨

○ 합격자의 포기 또는 파견 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, 차순위 후보자를 합격 처리





#### □ 선발 일정

구 분	일정(예정)	비고
서류접수기간	2020.05.25(월)~05.29(금) 18:00까지	우편접수 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*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항공편 중 단 및 감소로 우편접수가 여의치 않을 시에는 접수기간 내 선 이메일 접수, 후 원본 접수(이 경우, 원본과 이메일 접수서류가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)
면 접 시 험	2020.06.10(수) 15:00 예정	면접시간 추후공지 화상면접 진행
합격자 발표	2020.06.12(금) 18:00 예정	개별안내 및 국제협력부 홈페이지 공지 (http://ioffice.cbnu.edu)

※ 상기 예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#### 3. 서류접수

□ 접수기간 : 2020.05.25(월) ~ 05.29(금) 18:00까지

※ 주말은 접수하지 않음

□ 접수방법 : 국제협력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

- 우편접수는 2020.05.29(금) 18:00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, 우편물 분실, 담당자에 게 미도착 등의 사유로 인한 제출서류 미접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 있음
  - ※ 우편접수 시, 접수상황 체크 필수
  - ※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항공편 중단 및 감소로 우편접수가 여의치 않을 시에 는 접수기간 내 선 이메일 접수, 후 원본 접수(이 경우, 원본과 이메일 접수 서류가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)
- 접수처
  - 국내우편 : 54896,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국제협력부(뉴실크로드센터 3층) 교비유학생 담당자 앞(063-270-2184)
  - 항공우편 : 82-63-270-2184

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(1-33 New Silkroad Center 3<sup>rd</sup> Floor), Jeonbuk National University

567 Baekje-daero, Deokjin-gu, Jeonju-si, Jeollabuk-do, 54896 Republic of Korea





- □ 제출서류 :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
  - 교비유학생 지원서 1부 [서식 1]
  - 수학계획서 1부 [서식 2]
  - 입학허가서(2020년도) 또는 재학증명서 1부(2019년도 하반기, 2020년도 상반기 입학자)
  - 지도교수 추천서 1부 [서식 3]
  -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  - 대학 전체 학년 성적 증명서 1부
  - 이력서 1부
  - 여권 사본 1부 (지원자와 입학허가서 내 인물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)
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 4]
  - 해당 언어 공인인증시험 성적표 원본 및 복사본 1부
    - 원본과 복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, 원본은 복사본과 대조 후 반환
    -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성적에 한함(서류접수기한일 기준)
    - ※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(각종 증명서 복사본 제출 시 불인정)
    - ※ 구비서류 미비 및 기재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

#### 4. 장학금 지원

- □ 지원금 액수 : 8,000,000원/인(수학국가별, 학위과정별 구분 없음)
- □ 지급방법 : 장학금 신청서류 접수 후 지급
- □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
  - 장학금 지급 신청서 1부 [서식 6]
  - 서약 및 재정보증서 1부 [서식 8] : 인감증명서(본인 및 친권자) 및 친권인의 재산세(또는 농지세) 납세실적 증명서(납세액은 연 3만원 이상) 첨부
  - 주민등록등본(친권자 확인용)
  - 여권 사진면 및 비자면 복사본 1부
  - 출국 항공편 전자항공권 복사본 1부
  - 여권 내 유학국가 입국사실 확인면 사본 1부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부 \*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석사과정을 해외에서 마친 학생의 경우에만 한함
  - 본인 명의 국내 은행 통장 사본 1부(장학금 수령용)
  - ※ 체재지 도착 보고서 [서식 9] : 출국 1개월 이내 제출
  - ※ 학기 개시 6개월 후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1차 유학보고서 제출
  - ※ 유학보고서 : 소감문 또는 후배 지원자를 위한 조언, 유학준비 시 유의사항 등 자유 주제 기술
  - ※ 장학금 수령 후 입학을 포기하거나 자퇴(대학 변경 포함)하여 교비유학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, 합격된 해에 입학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,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
  - ※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





### 5. 선발자 의무사항

#### □ 유학수속

- 합격자는 합격한 해당 연도에 국외유학 및 국외여행에 관한 수속 일체를 마쳐 야 하며, 연기할 수 없음
- 입국허가, 출국, 기타 일체의 활동과 비용은 선발자 본인 부담으로 함

#### □ 학위취득 인정기간

- 교비유학생 지원 시 피력한 소정의 학위를 기한 내에 취득하여야 함
  - 석사과정 : 입학일로부터 3년 이내
  - 박사과정 :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
  - 석·박사 통합과정 : 입학일로부터 학위과정 연수 + 1년 이내
- □ 보고서 제출 : 유학기간 중에 다음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함
  - 체재지 도착 보고서 [서식 9]: 도착 1개월 이내에 제출(재학생은 즉시 제출)
  - 1차 유학보고서 : 학기 개시 6개월 후 제출
  - 수학 상황 보고(연 2회, 학기별):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스캔본 이메일 제출
  - 학위 취득 시 : 학위증 사본 및 '최종 유학보고서' 제출
  - 거주지 변경 시마다 거주지 변경 보고(체재지 도착보고서에 작성)
  - ※ 체재지 도착보고서 및 유학보고서는 서명날인한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

#### □ 서류작성 및 제출

- 교비유학생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제출하는 모든 서류, 보고, 증명 등에 허위 사실이 없도록 하여야 함
- '서약서'의 내용 준수
  - 교비유학생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서약서 [서식 8]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비 유학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인정이 취소된 자는 지원된 장학금을 총장이 지정하는 환수방법에 따라 상환해야 함

#### □ 기타사항

- 교비 유학생으로서 국위 손상 및 반국가적 행위를 금지
-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즉시 우리대학에 통보
- 연락처 : 82-63-270-2184, cbnu abroad@jbnu.ac.kr





#### 6. 참고사항

- □ 필요서류 발급 : 선발자의 유학수속 등을 위하여 총장은 다음 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
  - 총장 추천서
  - 교비유학 인정서
  - 장학금 지급(예정) 증명서

#### □ 대학 선정 시 유의사항

- 비영어권 국가 소재 대학 지원자는 해당 국가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대학에서 수학하여야 함(단, 일부 국가 제외)
- 비영어권 국가 합격자가 해당 언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 대학으로 진학 시 합 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

#### □ 장학금 환수

- 환수사유
  - 교비유학생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
 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되었을 경우
  - 서약 및 재정보증서 [서식 8] 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 - 교비유학생 합격 당시의 유학대학이 다른 대학으로 바뀐 경우
- 환수대상자 : 본인 및 친권자
- 환수방법
  - 교비유학생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 급된 장학금 전액을 일시 상환
  - 장학금 수령일부터 환수 완료일까지의 이자를 정수할 수 있음(시중은행 일반 대출 이율 적용)

